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03

2000년 7월 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00년 6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
 - 가. 제안이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99. 10. 30)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부실건설공사의 예방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 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제외할 수 있는 대상 중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제2항 단서)
 - 종전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요구 가능
 - 개정 :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요구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용훈)
 - 가. 먼저 제출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상의 건설공사품질 시험 또는 검사실시 기준 등이 1999년 10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나.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 조례 제5조제2항의 단서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

에 대해 품질시험 또는 검사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포괄적 규정을 시간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는 자재로 구체화함으로써 발주자의 과도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실시 요구 등으로 예상되는 건설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KS제품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자재공급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발주자의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실시의 예외적 기준을 명시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27

2000년 7월 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00년 6월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 가. 제안이유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의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위탁·시행하게 함으로써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제3자에 의한 공사감독을 도입, 감독의 효율성 및 부조리 개연성을 예방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위탁하여 처리하는 소규모공사의 범위 및 소규모공사에 대한 수탁자 감독업무 범위